

관세청과 함께하는 FTA 준비부터 문제해결까지

FTA 활용 성공 핵심 노트

FTA 활용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목 차

들어가기 관세청의 FTA활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 3

Section 1 FTA 활용준비 단계 / 4

1. 「FTA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2. 품목분류 가이드
3. FTA 활용지원 맞춤형 컨설팅
4. 「FTA 상설교육 센터」 설치
5. FTA 관련 정보 제공

Section 2 FTA 활용 단계 / 8

1.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보급
2.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3. 원산지증명서 발급
4.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5.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Section 3 FTA 문제해결 단계 / 12

1.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
2.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3. 원산지검증 결과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4. FTA 전문인력 구인·구직 연계 프로그램





» 관세청의 FTA활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관세청은 FTA 활용 단계에 따라 상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 합니다.

▶ 관세청의 FTA 활용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FTA 활용절차		관세청 지원 프로그램	FTA 원스톱 지원센터
준비단계	품목분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정보제공 • 품목분류 사전심사 	
	맞춤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활용 맞춤형 컨설팅 • FTA 상설 교육센터 	
	FTA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포털(스마트 FTA) • FTA 무역 리포터 발간 	
활용단계	원산지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PASS시스템 지원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인증 ·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 	
해결단계	대장관리 및 서류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통관애로 신고 • 원산지 검증 지원 및 권리구제 • FTA 전문인력 구인 · 구직 	



Section 1



» FTA 활용준비 단계

1. 「FTA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F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업상담관이 FTA 활용애로” 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신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FTA 원스톱지원센터 → 지역선택 → 신청서 작성 → 보내기(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세관)

* 마지막 페이지 권역세관별 FTA 원스톱지원센터 참고

진단 세관의 FTA 기업상담관

기업의 FTA 활용현황을 분석하여 시스템, 인력 등 미흡분야를 진단합니다.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FTA 활용 역량에 따라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별 맞춤형 Total 컨설팅 제공

진단 항목	기업 활용 역량에 따른 종합지원
원산지 관리 현황	• BOM 작성부터 FTA-PASS 구축·활용 교육
인증 취득 여부	• 신규 인증 취득 및 갱신지원
검증 대비 현황	• 자료보관 실태 진단 및 Sample 제시 등의 모의검증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 C/O, 원산지확인서 발급 안내

사후관리

FTA 활용 지원 이후 기업의 FTA 활용 동향,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FTA 활용준비 단계

2. 품목분류(HS) 가이드

▶ 정확한 품목분류를 관세청이 안내합니다

FTA 활용의 첫단계는 품목분류(HS)입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 세계 품목분류 정보 제공

원산지관리를 위해 제품 및 부품·원재료의 HS확인 필수입니다.

서비스명	• 세계 HS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내용	• 품목분류, 관세율표, HS국제분쟁 사례, 산업별(자동차, 반도체) 가이드 및 HS 온라인 교육(신통방통)
신고(신청)	• HS국제분쟁신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입국 세관당국(한국 :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 분류를 미리 회신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권자	• 수출입자, 제조자,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신청방법	• 웹 : 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 품목사전심사 * http://portal.customs.go.kr • 우편·방문 : 관세평가분류원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305-510, ☎ 042-714-7535)
제출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물품설명서, 신청물품 견본 등
반려대상	• 신청요건 미구비, 제조공정·운송에 따라 달라지는 물품, 분석 곤란물품, 추가자료 미제출, 소송절차 중

Section 1



» FTA 활용준비 단계

3. FTA 활용지원 맞춤형 컨설팅

▶ FTA 활용관련 종합적인 정감을 받고 싶나요?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 컨설팅하는 맞춤형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활용하세요.

👉 컨설팅 사업 안내 (☞ 뒷페이지 원스톱지원센터 참고)

사업기간	• 매년 3월 ~ 12월
지원대상	•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소기업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자부담 포함)
지원내용	• 민간 컨설턴트를 대상기업에 파견, 컨설팅 제공 ① FTA 활용종합 컨설팅 ② 검증대응 컨설팅 ③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컨설팅

4. 「FTA 상설교육 센터」 설치

▶ FTA 원산지제도가 어렵나구요?

전국 6개 세관에 설치된 「FTA 상설교육센터」에서 FTA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 세관별 FTA 상설교육센터 운영 현황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일정	월 4회(3H)	월 2회(3H)	월 2회(3H)	월 1회(3H)	월 1회(3H)	월 1회(3H)
장소	본부세관	산하세관, 지역상공회의회소 순회			본부세관	본부세관
내용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검증대비, 원산지 결정기준 사례 등					

※ 상설교육센터의 교육신청 및 문의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제공하는 「FTA 교육일정」 참고

Section 1



» FTA 활용준비 단계

5. FTA 관련 정보 제공

▶ FTA 원산지 최신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관세청 FTA 포털에서는 기업이 「FTA 활용 실무에 직접 적용」 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 042-481-3282)

FTA 일반		FTA활용		원산지검증		FTA기업지원		자료실	
FTA란?	FTA활용정보	원산지검증이란?	FTA비즈니스모델	협정별자료					
FTA 체결현황	C/O 발급	서류보관가이드	한·미 FTA활용	집행지침					
FTA 동향정보	FTA관련법령	자기검증TOOL	경진대회사례	서식모음					
공지사항	협정별 물량	관세적용보류	FTA영어집	서울정보					
FTA협정문	FTA 통계정보	검증사례	FTA 교육일정	원산지결정기준					
관련사이트	원산지확인서	검증지원센터	HS연계표	상대국통관정보					

※ 스마트 FTA : (앱) Play스토어, APP스토어에서 다운로드
(Web) <http://fta.customs.go.kr/mo> 접속

▶ FTA 활용 관련 종합정보 제공

무역리포트 (분기발간)	FTA 무역 현황 및 성과, 협정별·산업별 FTA 무역 동향 및 시사점 등의 정보를 제공 •구독문의 : 042-481-3282
-----------------	---

※ 관세청 고객센터 ☎ 1577-8577 (1번)

“One Call, Total FTA Service”



- 전화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 FTA 상담분야
FTA 전반 및 사후검증 문의
- 인터넷 사이트
<http://call.customs.go.kr>
- 방문상담

전화로 예약(02-3438-5113) 후 방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706호

Section 2



» FTA 활용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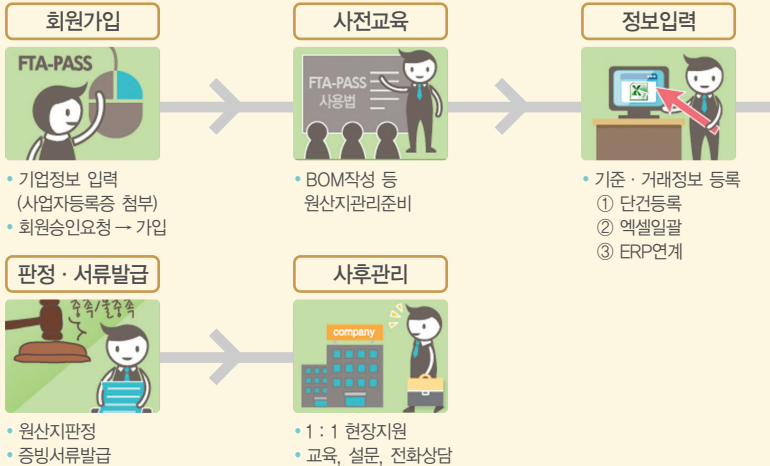
1.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보급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서류보관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FTA-PASS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유통망 구축도 도와드립니다.

▶ FTA-PASS의 종류

Web용 (클라우드형)	1. 일반형 (기본형)	2. 간편판정형 (초보, 영세업체)	3. 자재수불형 (ERP 사용기업)
PC용 (개별PC저장)	1. 일반형 (기본형)	2. 간편판정형 (초보, 영세업체)	3. 섬유·의류형 (해당산업특화)

▶ FTA-PASS 사용방법 (현장지원 포함)



연락처

홈페이지 : <http://www.ftapass.or.kr> (☎ 031-600-0770)
e-mail : fta-pass@origin.or.kr



» FTA 활용 단계

2.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여 드립니다.

▶ 세관장 사전확인제 신청방법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제조기업(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검토후 세관장 확인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분류(HS) 일치 여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자재명세서(BOM) 등 증빙서류 검토 · 보관 안내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6개 주요세관(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평택 세관)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세관장 확인물품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아세안, 인도, 페루 등으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서 발급합니다.



▲ <http://portal.customs.go.kr> (통관포털사이트)



Section 2



» FTA 활용 단계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1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BOM, 원료구입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2 UNI-PASS 이용 신청하기

UNI-PASS 사용자 안내서는 <http://portal.customs.go.kr> → Quick link 하단 → 사용자 안내서를 e-book 또는 pdf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 신청화면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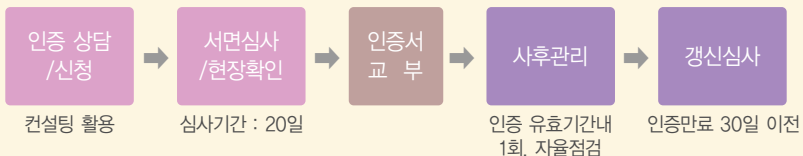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FTA or 일반 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 신청

4.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합니다.

인증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라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간소화, 원산지증명서 자동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 절차





» FTA 활용 단계

5.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해 수입전에 미리 신청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1과 (☎ 042-714-7523)

신청자	•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 생산자
심사대상	• 원산지 결정의 충족여부
제출서류	• 사전심사신청서,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등 심사서류
효력발생일	• 사전심사 교부일로부터 3년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신청가능 협정	• 칠레, 싱가포르, EU, 터키, 페루, 인도, 미국 (※ 제외 : 아세안, EFTA)

▶ 미국 관세청(CBP)의 품목분류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문의처 :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뉴욕소재)

대상	• 품목분류, 원산지, 원산지표기, FTA 세율 결정
신청자	• 수입자, 수출자, 심사신청건 관련자, 권한있는 대리인
서면 신청절차	• 지정 신청서 양식은 없고 거래관련 모든 사실 적시한 서면 신청 (신청자 인적사항, 반입항구명, 심사신청 종류, 거래사실 등과 증빙서류 사본) (우편) Director, NCSD, U.S. CBP Attn : CIE/Ruling Request One Penn Plaza-10th Floor New York, NY 10119
전자심사	• (e-Ruling) 온라인 신청서(template)를 작성 · 신청 본청 : (646) 733-3068, 3062 또는 3071 (온라인주소) https://apps.cbp.gov/erulings/index.asp *전자사전심사 신청건 추가문의는 전화만 가능



» FTA 문제해결 단계

1.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

FTA체결국간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통관애로에 대해 관세청이 해외주재 관세관, 외국 세관 컨택포인트 등을 통해 해결하여 드립니다.

▶ FTA 해외통관 애로 주요 유형별 1차 대처방법

유형	애로 내용	대처(예방)방법
형식적 오류	C/O 기재사항 불일치, 전자서명 C/O의 원본여부 등 형식적 요건미비로 C/O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준수 • 상업서류와 C/O 내용 일치 • C/O 출력시 칼라로 앞뒤 양면인쇄 • C/O 진위여부 조회시스템* 활용
HS상이	동일품목에 대해 체약국간 품목분류 상이시, 수입국의 HS로 특혜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어 특혜관세 배제사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판정(Advance Ruling)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입국의 HS 확인 • 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국의 HS 사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관세청 영문홈페이지(Information Plaza), 대한상의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영문홈페이지(Reference System)에서 조회가능

▶ FTA 통관애로 발생시 신고방법

- 1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 방문
- 2 FTA 원스톱 지원센터 「FTA 원스톱 지원하기」 클릭
- 3 신고서 작성 후 보내기 클릭
- 4 필요시 신고세관 담당자와 상담





» FTA 문제해결 단계

2.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FTA활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외국세관의 사후검증이 걱정되나요? 관세청이 외국세관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원산지 검증 유형

구분	검증 유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재료·부품 생산·공급자, 거래·운송 대행·취급한 자
검증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검증(수출 물품), 수입검증(수입 물품)
검증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수입국 세관), 간접(수출국 세관), 혼합방식
검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검증, 현지검증(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형태)

▶ 원산지 검증지원 프로그램

세관이 원산지 검증관련 사전에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상태 등을 진단하여 드리고, 사후검증 대비도 지원하여 드립니다.

사전검증 역량강화

협정별 원산지검증 규정, 서류보관 가이드라인, 자가검증 Tool, 검증사례 등 제공

- 원산지검증 지원센터 : ☎1577-8577
-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검증

*한-미 FTA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 : FTA자료실 E-Book Zone ➔ E-BOOK

사후검증 1:1 밀착 지원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수출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및 세관전문가 컨설팅

-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 원스톱지원센터 ➔ FTA 원스톱지원하기 ➔ 신청서 작성 ➔ 보내기



» FTA 문제해결 단계

3. 원산지검증 결과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원산지 조사 결과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처리절차 및 기간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
보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 요구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제기 신청서 •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조사결정 내용 • 해당 물품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등

▶ 권리구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상담센터 ☎ 1577-8577)

원산지 조사결과 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구제(불복)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종류	제기기간	재 결정	심리기관
과세전적부심	과세전통지날부터 30일 이내	세관장 관세청장	관세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처분 통지날부터 90일 이내	관세청장	관세심사위원회
심판청구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회의
감사원심사청구	90일 이내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 FTA 문제해결 단계

4. FTA 전문인력 구인·구직 연계 프로그램

FTA 전문인력에 대하여 FTA구인 기업과의 고용 연계(Job-matching)를 통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 ▶ FTA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원산지관리사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

시험일정	• 연간 3회
시험과목	• 4과목 (FTA협정·법령, 품목분류, 수출입통관, 원산지결정기준)
시험접수	• 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 원산지관리사 → 시험접수

※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origi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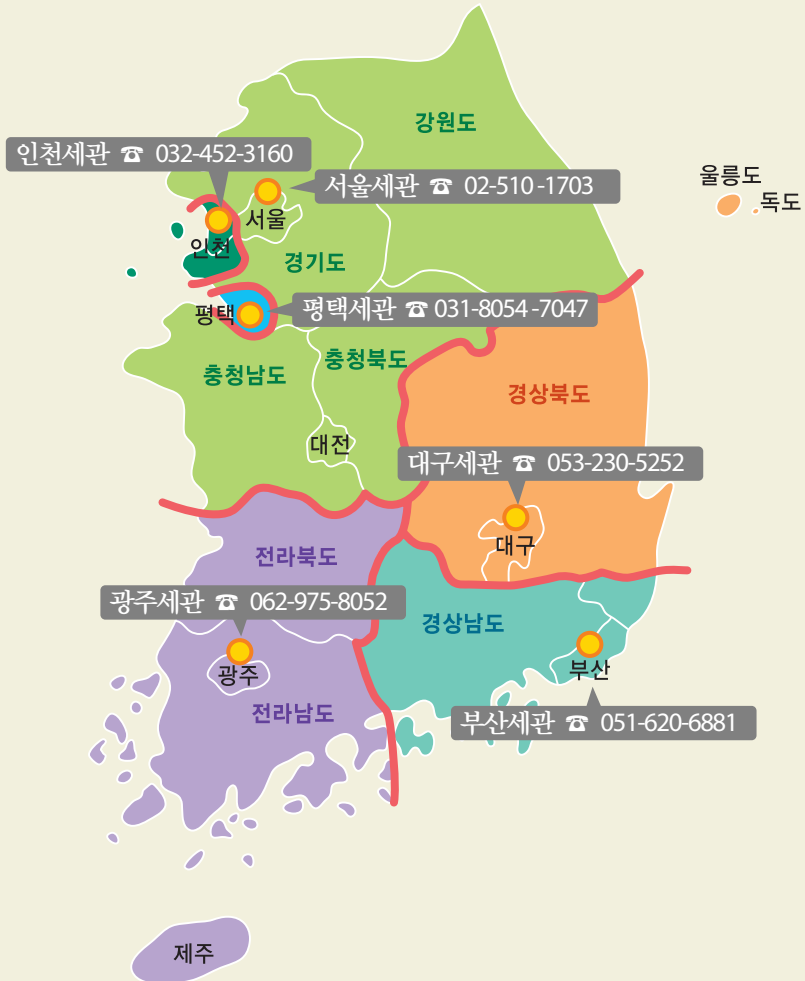
▶ FTA 전문인력과 구인기업간 고용매칭 프로그램

취업연계 FTA 전문인력 양성과 구인·구직 연계 프로그램(Job-matching)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명	연락처
서울	• 고졸성공 취업박람회 • FTA 전문인력 Job Matching Day	FTA1과 02-510-1700
인천	• FTA 구인·구직 만남의 날	FTA1과 032-452-3163
부산	• "Dream Come True" JOB FAIR	FTA과 051-620-6631
평택	• "Customs JOB Matching Fair"	통관지원과 031-8054-7041

원스톱 지원센터

중소기업의 FTA 활용준비 단계부터 활용 단계, 문제해결 단계까지 활용 및 검증대응, 통관애로 해결 등을 전국 6개 주요세관의 「One-Stop 지원센터」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KCS

(우)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3층